성주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9년 12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 가. 성주국민체육센터 운영시간 및 이용시간 현행화
 나. 지자체 면책규정이 있는 손해배상 부분 수정

2. 주요 내용
 가. 운영시간 및 이용시간 현행화
 ・운영시간 - 평일 06:00 ~ 21:00 → 06:00 ~ 22:00
 ・이용시간
 - 1종목당 1일 1회 2시간에 한한다(강습 10분전 입장 가능)
 나. 제13조(손해배상) 지자체 면책 규정이 있는 손해배상 부분 수정

3. 참고사항
 가. 관련근거 : 해당 없음
 나. 관련공문 : 기획감사실-7520(2019.7.29.)
 불합리한 자치법규 미정비 과제 정비 안내
 다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 라. 규제심사 : 개선사항 없음(기획감사실-11030(2019.11.1.))
 마.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(가족지원과-44563(2019.10.30.))
 바. 입법예고 : 의견없음(예고기간 '19. 11. 7 ~ 11. 27)
 사. 비용추계서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2호 중 “발전기실”을 삭제한다.
제6조“(운영시간 등)”을 “(운영시간 및 이용시간 등)”으로 한다.
제6조제1항제1호 중 “21:00”를 “22:00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⑤ 이용시간: 1종목당 1일 1회 2시간에 한한다.(강습 10분 전 입장가능)
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제13조(손해배상) 사용자는 시설 사용 시 발생한 인적·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운영시설) 2. 발전기실, ② (생 략) 제6조(운영시간 등) 1. 평 일 06:00 ~ 21:00 ②~④(생 략) <신 설>	제4조(운영시설) <삭 제> ② (현행과 같음) 제6조(----- 및 이용시간--) 1.----22:00 2. ②~④(현행과 같음) ⑤ 이용시간: 1종목당 1일 1회 2시간에 한한다.(강습 10분전 입장가능)
제13조(손해배상) ①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. ② 군수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스스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.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활동 등으로 인하여 센터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·형사상 책임을 진다.	제13조(손해배상) 사용자는 시설 사용 시 발생한 인적・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.